

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
폐지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53
----------	-----

2024. 4. 24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4. 12. 강남구청장(복지정책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4.)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복지생활국장 오선미)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」
가 2023. 5. 19. 자로 전부개정되어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
예방 및 지원 조례」 와 중복

3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」 를 폐지함.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 타

- (1) 폐지조례안, 별첨
- (2) 입법예고(2024. 2. 23. ~ 2024. 3. 13.) 결과, 접수된 의견 없음.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- (4) 부패영향평가 : 평가 제외대상임.
- 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제외대상임.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문성)

- 2017년 7월 7일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」는 강남구에 홀로 사는 노인이 고독사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.
- 노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」가 2018년 1월 4일 제정된 바, 1인 가구가 처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 상태를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서 기능하고 있음.
- 위 조례 간 중복성 등을 감안할 때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」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바, 이를 감안한 폐기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.

※ 참고자료

□ 조례 간 중복내용

👉 주요 중복내용	
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	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<u>홀로 사는 노인이 고독사에 대한 염려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<u>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5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심리상담 및 심리치료</u> 2. <u>가스·화재·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</u> 3. <u>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</u> 4. <u>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 제공</u> 5. <u>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</u> 6.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<u>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 	<p>제9조(예방 및 지원 사업)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심리상담 및 심리치료</u> 2. <u>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</u> 3. <u>가스·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</u> 8. <u>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·연계 서비스</u> 9. <u>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</u> 10.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<u>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
<p>제6조(지원대상)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<u>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 위험자</u> 2. <u>동 주민센터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</u> 	<p>제8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</u> 2. <u>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</u>

<p>3. <u>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</u></p>	<p>빈도 등이 <u>취약한 사람</u></p> <p>3. <u>동 주민센터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</u></p> <p>4. <u>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</u></p>
---	---

<p>👉 기타 증복내용</p>	
<p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」</p>	<p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」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2. <u>“고독사”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</u></p> <p>3. <u>“고독사 위험자”란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, 경제상황, 사회적 접촉빈도 등이 취약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,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</u></p> <p>2. <u>“고독사 위험자”란 경제적·신체적·정서적·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
<p>제4조(예방계획) ① <u>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2. <u>홀로 사는 노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6조(예방계획의 수립) <u>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3. <u>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청년층·중년층·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</u></p> <p>5. <u>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</u></p>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5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4. 12.

제출자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: 어르신복지과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」가 2023. 5. 19. 자로 전부개정되어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」와 중복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폐지조례안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4. 2. 23. ~ 2024. 3. 13.) 결과, 접수된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평가 제외대상임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제외대상임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
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

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의안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사회8급 박지현(☎ 02-3423-5923)